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789호, 2022. 1. 18. 공포, 2023. 1. 19. 시행)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 위임하고,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항공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특별감항증명 업무에 항공기를 제작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호)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권한을 실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인사·복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호의2 신설)

다.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5 제3호마목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정비·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정비등을”을 “정비·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제26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별표 5 제2호마목부터 조목(대통령령 제32677호의 초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초목(대통령령 제32677호가 시행될 경우 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6조제1항제1호”를 “법 제166조제1항제1의2”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66조제1항제1호	250	375	500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시행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 · 위탁) ① -----		
1. (생략)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의 특별감항증명은 제외한다.		-----.		
가. 항공기를 정비 · 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1. (현행과 같음)		
나. 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지 승객 ·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2. -----		

		-----.		
다. ~ 카. (생략)		가. ----- 제작·정비 · 수리 또는 개조-----		
3. ~ 12. (생략)		-----		
<신설>		-----		
13. ~ 60. (생략)		나. ----- 정비 · 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		

		다. ~ 카. (현행과 같음)		
		3. ~ 12. (현행과 같음)		
		12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		
		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 · 시행		
		13. ~ 60.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u><신설></u> 2. ~ 12. (생략) ③ ~ ⑩ (생략)	②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제41조의2에 따른 건</u> <u>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u> 2. ~ 1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	---